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72

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백혜련·부승찬·박지원

이재정 · 김영진 · 민홍철

김태년 · 백승아 · 염태영

노종면 · 김한규 · 이성윤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보호·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.

최근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,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중 "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5조(피해자 보호·지원) ①	제15조(피해자 보호ㆍ지원) ①		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피해자는 「성폭력방지 및	4		
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			
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			
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매매방			
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	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		
<u>법률」</u> 등에 따른 보호·지원	법률」,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		
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	<u>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</u>		